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5. 7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관할구역의 광범위함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의 필요성 및 군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, 신고가 빈번한 지역 및 주요 거점 장소에 순찰 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순찰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순찰차 정의 및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(안 제10조의4제1항)
-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및 보조표지 설치(안 제10조의4제2항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주차장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,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.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관내 신고가 많은 거점장소 인근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여 평창군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마련 및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의4(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에서 노상 주차장 중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, 안내표지 및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관내 신고 다발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출동 및 민원 해결을 통해 평창군의 안전한 환경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,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차장법

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.

1.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
 2.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
 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,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
-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,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주차장법 시행규칙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 5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② (생략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